

제2549호
2017. 11. 1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규 칙
제69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2
- 고 시
제2017-10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3
제2017-10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24
- 공 고
제2017-794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5
제2017-795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36
제2017-797호: 2017년 장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사정명령 및 이행보증금 부과고 통지항척~2차 사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4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9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으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영 제21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로 한다.

제12조 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24조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9항 중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한다)”를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폐질”을 “장애”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하고,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2호 중 “견습직원의 견습근무기간”을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표창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주우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보상”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직무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제안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본문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9조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한다.

제15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5조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과태료 처분의”를 “과태료 처분에”로, “30일”을 “60일”로, “제8호서식의”를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체장애자용”을 “지체장애인용”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보도횡단구배”를 “보도횡단경사”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호 중 “영 제30조제6항”을 “영 제56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35조”를 “영 제63조”로 한다.
제10조제5항 “법 제84조”를 “법 제97조”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31조”를 “영 제59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u>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 아. (생 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u>에 따 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 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 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 아.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 시 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u>행정자치부 장관</u>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u>행정자치부</u> 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제도지원) 구청장은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제 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u>행정자치부 장관</u>에게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 시 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u>행정안전부 장관</u>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u>행정안전부</u> 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1조(제도지원) 구청장은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제 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u>행정안전부 장관</u>에게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 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액여비) <u>조례 제4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월</p>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 비 조례」 제6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p>

<p>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p> <p>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u>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u>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 규칙</u>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p>	<p><u>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p> <p>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u>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u>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u>,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공무원임용령</u>(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u>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u>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영 제21조의2</u>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p> <p>3. ~ 8. (생략)</p> <p>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u>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u>」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p> <p>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② (생략)</p> <p>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u>「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u> 별표 2에</p>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공무원 임용령」</u>제4조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u>」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방공무원 임용령</u>」(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p> <p>3. ~ 8. (현행과 같음)</p> <p>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u>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u>」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p> <p>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u>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u>」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p>

다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⑧ (생략)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생략)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자격증가점)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자격증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p>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6]와 같다. ② (생략)</p>	<p>16)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 조례(이하조례 라한다)</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의 자격) <u>조례</u>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5.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의 자격) 「<u>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생략)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 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u>폐질</u>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u>폐질</u>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132 1249 703 1424"> <tr> <td>폐질등급</td> <td>가산지급배수</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able>	폐질등급	가산지급배수	(생략)	(생략)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 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u>장애</u>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u>장애</u>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746 1281 1334 1442"> <tr> <td><u>장애</u>등급</td> <td>가산지급배수</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able>	<u>장애</u> 등급	가산지급배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폐질등급	가산지급배수								
(생략)	(생략)								
<u>장애</u> 등급	가산지급배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략) ② 공무원이 휴가·<u>지참</u>·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휴가·<u>지각</u>·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p> <p>③ (생략)</p>	<p>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p> <p>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u>아니된다</u>.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p> <p>1. ~ 4.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p> <p>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u>아니 된다</u>.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p> <p>제3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영 제21조의2에 따른 <u>견습직원의 견습근무</u> 기간 종료 후의 임용</p> <p>3. ~ 6. (생략)</p> <p>7.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7조제1항과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6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p>	<p>「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p> <p>제3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2. 영 제21조의2에 따른 <u>수습직원의 수습근무</u> 기간 종료 후의 임용</p> <p>3. ~ 6. (현행과 같음)</p> <p>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1항과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p>

<p>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제6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차관급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p> <p>3. (생 략)</p> <p>②·③ (생 략)</p>	<p>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제5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차관급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바에 의한다.</p> <p>① ~ ③ (생 략)</p> <p>④ 주관부서는 <u>민원봉사과</u>를 말한다.</p> <p>제5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 (생 략)</p> <p>② (생 략)</p> <p>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p> <p>2.·3. (생 략)</p> <p>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바에 의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주관부서는 <u>민원여권과</u>를 말한다.</p> <p>제5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p> <p>2.·3. (현행과 같음)</p> <p>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p> <p>제2조(정의) (생 략)</p> <p>1. ~ 5. (생 략)</p> <p>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p> <p>②·③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8조(용어사용) ① (생략)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u>문화관광부</u>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8조(용어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u>문화체육관광부</u>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미불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확보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확보하여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생략) 1. (생략)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 6.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 6. (현행과 같음)</p>

<p>제26조(출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1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p>	<p>제2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중앙의뢰 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중앙의뢰 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67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p>	<p>「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67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p>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생 략)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생 략)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 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부터 별지 제52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9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재무과장 또는 계약담당주사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9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② (생 략)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 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부터 별지 제52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재무과장 또는 계약담당주사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9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p>제96조의 2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75조(징수금 관리) 채권관리관이 채권액(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금고에 <u>불입</u>하고 수납필통지서, 수납부 또는 체납부의 관계대장에 소인하고 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제18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를 따른다.</p> <p>제191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 및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75조(징수금 관리) 채권관리관이 채권액(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금고에 <u>납입</u>하고 수납필통지서, 수납부 또는 체납부의 관계대장에 소인하고 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제18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를 따른다.</p> <p>제191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p> <p>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략)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생략) 3. 4. (생략) 	<p>「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p> <p>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p>「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p>	<p>「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p>

<p>한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p> <p>② (생략)</p>	<p>한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u>행정안전부장관</u>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제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② (생략)</p> <p>③ 조례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제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조례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p> <p>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p> <p>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 조례 제22호에 따른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종량제봉투의 모양·규격·재질 및 표시등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u>중소기업청장</u>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 조례 제22호에 따른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종량제봉투의 모양·규격·재질 및 표시등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 대상 <u>환경미화원의 구조</u>에 입금시켜야 한다.</p> <p>③ 입금초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 대상 <u>환경미화원의 계좌</u>에 입금시켜야 한다.</p> <p>③ 입금초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u>도로법 시행규칙</u>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u>도로법</u>」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u>과태료 처분</u>의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p>	<p>「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u>도로법 시행규칙</u>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삭제></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u>과</u></p>

<p>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u>지체장애사용 의자차</u>를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 ③ (생략)</p> <p>④ 건축시 건축주로부터 공공보도 정비가 시행되는 경우 건축과장은 <u>보도횡단구배·재료·포장단면도·주변지역과 조화</u> 등의 공사계획을 도로시설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서울특별시 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u>지체장애이용 의자차</u>를 말한다.</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건축시 건축주로부터 공공보도 정비가 시행되는 경우 건축과장은 <u>보도횡단경사·재료·포장단면도·주변지역과 조화</u> 등의 공사계획을 도로시설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p> <p>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p>	<p>「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p> <p>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p>

<p>1. (생 략)</p> <p>2. <u>영 제30조제6항</u>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p> <p>3. (생 략)</p> <p>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u>영 제35조</u>에 따라 구성된 중구 도로관리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 ⑤ (생 략)</p> <p>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u>법 제84조</u>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u>영 제31조</u>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영 제56조제6항</u>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u>영 제63조</u>에 따라 구성된 중구 도로관리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 ⑤ (생 략)</p> <p>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u>법 제97조</u>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u>영 제59조</u>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p>
--	--

<h2 style="margin: 0;">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2>
--

1. 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법제처 정비과제 대상 규칙과 자율정비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부 등

나.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수정사항 반영

- 장애인 → 장애인, 폐질 → 장애, 구좌 → 계좌, 지참 → 지각 등

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조문) 등 개정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3-9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75	2017.11.15	청구로2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1.03.02	청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655, 432-220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7-9	2017.11.15	동호로1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다길 23	2017.11.15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94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1.1.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 체납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 과 같이 공개합니다.
-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개인) 1부.
-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법인) 1부.

2017 년 11 월 15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개인)									
(단위 : 원)									
연번	성명	상호	업종	나이	체납자주소	총체납액	대표세목	대표세목 납기일	체납요지
1	장정원		주택건축 판매	70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64	23,804,46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분	2014-04-30	2014년 지방소득세 등 총6건
2	김상열	정성본당산점	한식	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380번길 57	27,302,950	재산세 토지	2009-09-30	2009년 재산세 등 총10건
3	은희경	주식회사 아리올관광레저	호텔업	5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42	71,022,890	재산세 토지	2015-09-30	2015년 재산세 등 총2건
4	김순석	석금사		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36	20,204,430	종합토지세	1999-10-31	1999년 종합토지세 등 총12건
5	황기준	준패션		5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가길 11-8	22,299,440	등록세 자동차	1994-05-31	1994년 등록세 등 총31건
6	박인숙	명진사우나	사우나, 목욕	6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6-45	20,980,06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분	2015-12-31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12건
7	이춘기	라스베가스		6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성덕영곡길 164-1	33,369,990	재산세 토지	2008-09-30	2008년 재산세 등 총7건
8	이동근	세인트जू드 에듀 (St. Jude e edu)	유학, 어학연수	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6길 8	18,032,880	취득세 부동산	2012-05-31	2012년 취득세 등 총10건
9	김귀남	모드		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45-6	17,831,430	자동차세 자동차	1995-03-31	1995년 자동차세 등 총120건
10	이상규			7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2길 11	19,588,870	등록세 자동차	1995-10-31	1995년 등록세 등 총113건
11	이덕기	을지인쇄		6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나길 38-17	17,829,800	등록세 자동차	1995-11-30	1995년 등록세 등 총54건
12	신보순	제일사		78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 110-10	35,128,670	재산세 토지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9건
13	김연곤	부광통운		89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3,478,130	자동차세 자동차	1998-06-30	1998년 자동차세 등 총41건

14	정명균	라운스크린골프	골프 연습장	67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21길 8	23,798,820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2013-09-30	2013년 지방소득세 등 총23건
15	박영식	팡팡노래주점		6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84	29,058,840	재산세 토지	2006-09-30	2006년 재산세 등 총9건
16	류시자	(주)대진농산		78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21,068,190	등록세 자동차	1994-10-31	1994년 등록세 등 총28건
17	성기택	해성당구장		6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4	15,393,80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015-07-11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3건
18	송인숙	이앤에프		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6	12,463,280	재산세 토지	2009-09-30	2009년 재산세 등 총11건
19	하 주환			82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15	27,348,760	종합토지세	1993-10-31	1993년 종합토지세 등 총2건
20	김계남	삼화건설		66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5길 32	41,400,950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2014-06-15	2014년 지방소득세 등 총5건
21	전부일	오영모사		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74	29,905,080	종합토지세	2011-09-30	2000년 종합토지세 등 총38건
22	이영업	충정천지사우나	목욕장업	56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0	17,657,900	재산세 건축물	2007-07-31	2007년 재산세 등 총5건
23	전재환	롯데햄강서대리점		8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09번길 3-6	25,674,100	재산세 토지	2007-09-30	2007년 재산세 등 총11건
24	장봉성	동신물류	임대	60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14	12,045,690	재산세 토지	2012-10-30	2013년 재산세 등 총4건
25	유해균	제일화재옥빛대리점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	7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76번길 7	18,603,270	자동차세 자동차	1998-06-30	1998년 자동차세 등 총83건
26	김병수	삼일빌딩	임대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돌레11가길 10-10	23,406,280	재산세 토지	2009-09-30	2009년 재산세 등 총2건
27	우상식	대원문화인쇄	인쇄	5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80	38,018,600	재산세 토지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33건
28	권순창			63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3길 59	14,248,180	자동차세 자동차	1995-12-31	1995년 자동차세 등 총71건
29	정찬균	동경		52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 24	13,880,860	자동차세 자동차	1996-06-30	1996년 자동차세 등 총98건
30	김학봉	현대상사	대부	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3-65	14,962,270	자동차세 자동차	1995-12-31	1995년 자동차세 등 총115건
31	윤 속자	보문식당		67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35	17,376,080	재산세 토지	2007-09-30	2007년 재산세 등 총9건
32	김승미	(주)브레포푸드플러스	식품종합 소매	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30,371,080	재산세 토지	2009-06-25	2009년 재산세 등 총2건
33	김호선	중앙속녀복		81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95-19	48,006,670	재산세 토지	2008-09-30	2008년 재산세 등 총25건
34	윤경민	주식회사 에이	의류	39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46	17,247,190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2012-11-30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4건

		케이에이				등분			
35	윤수정	샬리 네일		51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41-1	20,846,710	재산세 토지	2012-09-30	2012년 재산세 등 총12건
36	이재형	(주)대연		7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0길 37	45,644,510	종합토지세	1999-10-31	1999년 종합토지세 등 총9건
37	심길종	은정네		7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46번길 14	33,404,640	재산세 토지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10건
38	허필수	중앙교육진흥연 구소		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35길 9	25,801,800	재산세 토지	2011-08-31	2011년 재산세 등 총11건
39	김용생	청송회관		6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14,195,100	자동차세 자동차	1995-03-31	1995년 자동차세 등 총74건
40	김옥수	현대당구장		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25,017,440	재산세 토지	2007-09-30	2007년 재산세 등 총12건
41	김정현			6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6	22,905,160	재산세 토지	2008-09-30	2008년 재산세 등 총11건
42	김흥기	유품중기		5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2길 20	17,971,650	취득세 기계장비	1997-01-31	1997년 취득세 등 총139건
43	이재희	곰도리	임대	6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92	35,464,680	재산세 토지	2015-05-31	2012년 재산세 등 총2건
44	안 종 수	원풍종합전자		70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202	12,993,030	취득세 자동차	2001-09-30	2001년 취득세 등 총60건
45	이상희			47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길 6	21,652,430	재산세 토지	2013-09-30	2013년 재산세 등 총19건
46	이수범			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49-5	16,358,870	자동차세 자동차	1996-06-30	1996년 자동차세 등 총79건
47	송영식	송영식부동산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12	12,797,820	재산세 토지	2008-09-30	2008년 재산세 등 총5건
48	손형석	(주)인세인	서비스업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45	447,000,000	재산세	2014-07-31	2014년 재산세 등 총 12건
49	서병도	알이에스	건설업	55	서울 중구 청파로 464	107,000,000	지방소득세	2014-08-31	2014년 지방소득세 등 총 15건
50	김성수	정건사우나	서비스업	52	서울시 중구 을지로213	18,000,000	지방소득세	2015-02-28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 14건
51	송만엽	초당식품	서비스업	87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7길 12-5	66,000,000	재산세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 42건
52	김인호			109	서울시 중구 신당동290-35	48,000,000	재산세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 40건
53	장재승			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8번길 5-20	573,000,000	재산세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 14건
54	양정자			69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5길 18	28,000,000	재산세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 7건
55	김명옥			51	서울시 중구 청구로3길 55	31,000,000	주민세	2001-08-31	2001년 주민세 등 총 38건
56	김혜경			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10	28,000,000	재산세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 11건
57	정한성			58	서울시 중구 퇴계로41가길11-6	26,000,000	재산세	2012-07-31	2012년 재산세 등 총 20건
58	이원호			54	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91	23,000,000	지방소득세	2010-10-31	2010년 지방소득세 등 총 15건
59	김순열			51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19-4	19,000,000	지방소득세	2012-08-31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 24건
60	이창기			53	서울시 중구 황학동 67	23,000,000	재산세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 11건

61	김영철			65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9길 9-72번지	18,000,000	재산세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 33건
62	최장락			65	서울시 용산구 회남로13길 58	20,000,000	재산세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 28건
63	신관우			47	서울 중구 다산로35길 25-31	18,000,000	주민세	2006-06-30	2006년 주민세 등 총 16건
64	김규영			64	서울시 중구 난계로15길 3	18,000,000	지방소득세	2011-08-31	2011년 지방소득세 등 총 10건
65	강정수			6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간절로 77	16,000,000	취득세	1995-04-30	1995년 취득세 등 총 79건
66	신춘옥			62	서울 중구 동호로11차길 30	16,000,000	자동차세	2002-12-31	2002년 자동차세 등 총 33건
67	이영숙			61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82-1	16,000,000	지방소득세	2012-06-30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 11건
68	신우철			4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3길 10-10	13,000,000	주민세	2004-09-30	2004년 주민세 등 총 13건
69	황원철	삼원(주)	건설업	7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6	875,000,000	지방소득세	2005-10-31	2005년 지방소득세 등 총 78건
70	유진희	미주건설	건설업	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01번길 32	589,000,000	재산세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 17건
71	김종섭	주식회사 메트 로스파캐빈	부동산 개발업	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1길 5	240,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457건
72	허경빈	영생디벨러먼트 (주)	건설업	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36길 6-4	199,000,000	재산세	2006-09-30	2006년 재산세 등 총 6건
73	신정현			74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9-8	122,000,000	자동차세	2009-12-31	2009년 자동차세 등 총 30건
74	박대성			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4-6	91,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1,027건
75	서 철	(주)디자이너크럽	도소매업	5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8길 30	297,000,000	재산세	2013-07-31	2013년 재산세 등 총 171건
76	강용덕	새섬산업	건설업	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19-13	64,000,000	종합토지세	2000-10-31	2000년 종합토지세 등 총 13건
77	황원훈			6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43,000,000	재산세	2011-07-31	2011년 재산세 등 총 77건
78	김종건			7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16	35,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28건
79	이성목			75	경기도 의정부시 회릉로117번길 47-17	36,000,000	종합토지세	2003-10-31	2003년 종합토지세 등 총 4건
80	이성준			53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백고개길 37-24	13,000,000	자동차세	1995-03-31	1995년 자동차세 등 총 135건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법인)							
(단위 : 원)							
연번	법인명	업종	법인소재지	총체납액	대표세목	대표세목 납기일	체납요지
1	(주)한상무역		서울 중구 을지로 158	20,683,370	자동차세 자동차	1996-12-31	1996년 자동차세 등 총130건
2	자유실업(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65	50,154,860	종합토지세	2001-10-31	2001년 종합토지세 등 총15건
3	예장동재건축조합		서울 중구 퇴계로30길 24	21,531,400	재산세 건축물	2000-02-29	2000년 재산세 등 총2건
4	(주)엠엑스엠	임대	서울 중구 을지로 251	43,318,970	재산세 건축물	2012-07-31	2012년 재산세 등 총25건
5	(주)리치항공	수출업	서울 중구 퇴계로10길 27	48,754,95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2015-03-02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8건
6	(주)건우유통		서울 중구 퇴계로 61	48,665,220	종합토지세	1997-10-31	1997년 종합토지세 등 총19건
7	(주)원천진흥		서울 중구 동호로 352	17,888,050	주민세 법인세할분	2002-02-20	2002년 주민세 등 총49건
8	(주)도고종합연수센터		서울 중구 을지로 158	15,941,400	자동차세 자동차	1989-12-31	1989년 자동차세 등 총41건
9	(주)씨티피아	인쇄업	서울 중구 충무로 15	15,064,02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소득세분	2012-07-30	2012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19건
10	(주)수경비에프	프랜차이즈 (빵)	서울 중구 명동3길 17	17,542,47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2014-12-29	2014년 지방소득세 등 총31건
11	청계상가아파트(주)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0	54,751,970	재산세 토지	2009-10-28	2009년 재산세 등 총45건
12	남대문F동지구운영회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40	29,877,370	재산세 건축물	2013-07-31	2013년 재산세 등 총7건
13	(주)비즈센터	보험대리점	서울 중구 통일로 92	28,545,13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2013-02-28	2013년 지방소득세 등 총11건
14	법무법인 우인	변호사	서울 중구 명동9길 39	30,870,70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2015-01-31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9건
15	(주)진아미디어	회원모집	서울 중구 을지로 30	18,914,37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2014-04-28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5건

		대행			소득세분		
16	플러스에프앤씨(주)	기업구조조정업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	11,462,94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15-02-28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3건
17	주식회사 굿모닝애드닷컴	광고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9	19,218,68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분	2015-04-28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6건
18	삼정에스디(주)	임대	서울 중구 칠패로 27	30,696,510	재산세 건축물	2012-07-31	2012년 재산세 등 총10건
19	삼일건설기계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19,059,180	취득세 자동차	1991-10-31	1991년 취득세 등 총161건
20	이래어드바이저스유한회사	부동산관련자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8	25,274,170	재산세 토지	2013-01-28	2012년 재산세 등 총4건
21	(주)시연개발		서울 중구 을지로 227	11,440,560	자동차세 자동차	2000-12-31	2000년 자동차세 등 총29건
22	(주)굿모닝시티	부동산관리 및운영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206,909,750	재산세 토지	2012-09-30	2012년 재산세 등 총511건
23	(주)솔로스	복합운송업	서울 중구 세종대로 58	20,667,920	주민세 법인세할분	2009-10-31	2009년 주민세 등 총33건
24	보성프라스틱(주)		서울 중구 동호로 373	13,690,560	취득세 자동차	1992-09-30	1992년 취득세 등 총107건
25	(주)의남라인네트	기타무역업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32	23,325,060	재산세 토지	2011-08-31	2011년 재산세 등 총71건
26	(주)다음이엔씨	부동산업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6길 10-15	33,443,440	재산세 토지	2012-10-30	2012년 재산세 등 총94건
27	주식회사 제이파트너스	대출중개	서울 중구 충무로 7	25,307,7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12-11-30	2012년 지방소득세 등 총15건
28	(주)한국제너텍	전기기기 및 관련제품	서울 중구 다산로 134	42,682,87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13-03-28	2013년 지방소득세 등 총15건
29	한국피코(주)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4	15,367,600	자동차세 자동차	1996-06-30	1996년 자동차세 등 총143건

30	주식회사 부진	소프트웨어 개발	서울 중구 동호로11아길 16-1	18,531,840	자동차세 자동차	2015-12-31	2015년 자동차세 등 총81건
31	코리아신탭주식회사 (주)성창에프엔디	신탭 및 부수업무	서울 중구 퇴계로 115	585,237,760	재산세 토지	2014-09-30	2015년 재산세 등 총1건
32	(유한)애관극장		서울 중구 퇴계로27길 58	22,801,210	자동차세 자동차	1995-12-31	1995년 자동차세 등 총83건
33	(주)한우기전	전기용기계 장비 및 관련제품	서울 중구 을지로27가길 3	27,520,38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소득세분	2012-10-30	2012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6건
34	신양전기		서울 중구 산림동 166	20,302,160	자동차세 자동차	1987-09-30	1987년 자동차세 등 총89건
35	(주)맥스리얼티	임대	서울시 중구 통일로 114	25,233,920	재산세 토지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30건
36	(주)아팩스에이앤씨	기타통신판매업	서울 중구 퇴계로88길 20	27,190,84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소득세분	2014-08-28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22건
37	(유한)진이라이프		서울 중구 명동8가길 61	25,576,090	자동차세 자동차	1995-12-31	1995년 자동차세 등 총24건
38	(주)위드항공여행사	여행사	서울 중구 무교로 19	14,870,81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소득세분	2015-07-28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8건
39	(주)제이에이치에이디앤씨	인테리어공사	서울 중구 을지로9길 26	37,284,200	자동차세 자동차	2013-12-31	2013년 자동차세 등 총163건
40	장복건설(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13번길 6	16,704,560	재산세 건축물	1995-12-31	1995년 재산세 등 총14건
41	무교디앤엠(주)	분양대행컨설팅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6	31,921,720	재산세 토지	2014-09-30	2014년 재산세 등 총3건
42	(주)위엔		서울시 중구 퇴계로73길 50	14,828,580	재산세 토지	2012-06-25	2012년 재산세 등 총181건
43	청라해운 주식회사	해상화물운송	서울 중구 서소문로 99	23,912,050	법인지방소득세 법인 소득세분	2014-01-31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3건

44	(주)브릿지북스코리아	출판	서울 중구 난계로 159	24,375,720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법인	2012-07-31	2012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4건
45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	18,923,020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법인	2012-11-28	2012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5건
46	(주)해토컨설팅	광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15-8	15,473,120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법인	2010-07-31	2010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총30건
47	일중교역(주)	서비스업	서울 중구 퇴계로20나길 12	16,000,000	재산세		2012-09-30	2012년 재산세 등 총 93건
48	(주)인텔로그디앤씨	서비스업	서울 중구 쌍림동 243-1	200,000,000	재산세		2013-07-31	2013년 재산세 등 총 351건
49	(주)이피닉스네트웍스	서비스업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4	28,000,000	재산세		2013-09-30	2013년 재산세등 총 140건
50	(주)서인인앤아이	건설업	서울 중구 정동길 12-11	19,000,000	지방소득세		2013-10-31	2013년 지방소득세 등 총 24건
51	케이디알앤디	주택건설업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 20	10,473,000,000	재산세		2007-07-31	2007년 재산세 등 총 710건
52	(주)케이디프레이피에프브이	부동산개발업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20	8,424,000,000	재산세		2011-07-31	2011년재산세등총20건
53	(주) 바스코	부동산임대업	서울 중구 퇴계로63길 10	2,872,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5,311건
54	주식회사 월드인월드	부동산개발업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7	2,615,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811건
55	(주) 디엠씨플래닝	부동산개발업	서울 중구 을지로 264	2,085,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2,716건
56	동안종합개발(주)	주택건설업	서울 중구 을지로2가 88-5	1,796,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4건
57	(주)크레온디자인	설계용역업	서울 중구 명동8나길 15	1,387,000,000	재산세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 35건
58	(주)진양프라자	도소매업	서울 중구 퇴계로 217	916,000,000	재산세		2002-07-31	2002년 재산세 등 총 1,030건

59	(주)하트존	부동산개발업	서울 중구 명동4길 25	953,000,000	재산세	2006-07-31	2006년재산세등총387건
60	(주)아시아인앤씨	부동산서비스	서울 중구 인현동1가 138-3	789,000,000	재산세	2012-07-31	2012년 재산세 등 총 53건
61	(주)한빛이앤씨	주택건설업	서울 중구 명동9길 21	458,000,000	재산세	2005-07-31	2005년 재산세 등 총 21건
62	중앙이티피 (주)	판매업	서울 중구 을지로 147	433,000,000	재산세	2008-07-31	2008년 재산세 등 총 769건
63	판코리아홈업(주)	건설업	서울 중구 을지로 105	396,000,000	재산세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 37건
64	(주)엔비하이텍	건설업	경기 광명시 하안로 228	390,000,000	재산세	2010-09-30	2010년 재산세 등 총 8건
65	제이디아너스티(주)	주택건설업	서울 중구 퇴계로 123	376,000,000	재산세	2012-07-31	2012년 재산세 등 총 340건
66	(주)신아알앤에스	서비스업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447	360,000,000	재산세	2012-07-31	2012년 재산세 등 총 360건
67	(주)광개토별판	건설,건축업	서울 중구 퇴계로6길 3-20	297,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74건
68	(주) 대유	제조, 판매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63	295,000,000	재산세	2009-07-31	2009년 재산세 등 총 6건
69	누존상가개발조합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62	297,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2,137건
70	(주)디자이너클럽	도소매업	중구 을지로45길 72	229,000,000	재산세	2013-07-31	2013년 재산세 등 총 56건
71	서주산업(주)	식품제조업	서울 중구 충무로2라 60-3	208,000,000	재산세	2002-07-31	2002년 재산세 등 총 81건
72	정보이십일세기주식회사	부동산개발업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370	207,000,000	재산세	2011-07-31	2011년 재산세 등 총 107건
73	동아지기인쇄공업(주)	부동산임대업	서울 중구 북창동 104	143,000,000	재산세	2002-07-31	2002년 재산세 등 총 14건
74	(주)삼원이엔에스	건축공사업	서울 중구 퇴계로 272	131,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126건
75	(주)유엔아이리더스	주택건설업	서울 중구 수표로 61	118,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19건
76	(주)씨앤라인	운송사업	서울 중구 장교동 1	114,000,000	재산세	2009-09-30	2009년 재산세 등 총 18건
77	새섬산업(주)	부동산서비스	중구 퇴계로 217	156,000,000	재산세	2012-07-31	2012년재산세등총420건
78	(주)한섬이공사	도소매업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50	106,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534건

79	한국부동산산업개발(주)	의류제조도 소매업	서울 중구 퇴계로 217	91,000,000	재산세	2007-07-31	2007년 재산세 등 총 266건
80	나산종합건설(주)	건설업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산 142-1	89,000,000	종합토지세	2001-10-31	2001년 종합토지세 등 총 2건
81	옥계도시개발(주)	주택건설업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32길36	88,000,000	재산세	2011-07-31	2011년 재산세 등 총 108건
82	코업(주)	부동산개발업	서울 중구 을지로 246	72,000,000	재산세	2007-07-31	2007년 재산세 등 총 46건
83	리치월드홀딩스(주)	투자자산운 용업무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2	64,000,000	재산세	2011-07-31	2011년 재산세 등 총 67건
84	(주)와이지씨	건설업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12	65,000,000	재산세	2013-07-31	2013년 재산세 등 총 49건
85	세우레저개발(주)	건축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길 47-7	52,000,000	재산세	2010-07-31	2010년 재산세 등 총 418건
86	부영산업(주)	건축건설업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56	33,000,000	종합토지세	2000-10-31	2000년 종합토지세 등 총 8건

●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17-795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66호(2017.08.17.)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사업 개요

사업 명칭	사업시행지	사업 종류 및 규모	인가 고시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중구 남창동 205번지 일대	도로개설 폭 6m 연장 100m	서울특별시 중구고시2 017-66호 (2017.08.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7.08.17.~ 2019.12.30.

나. 보 상 물 건 : 토지 13필지, 물건 8건, 영업권 6식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다.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 후 우리 구가 정한 기간 내

라. 보 상 금 지 급 : 협의계약 체결 후 은행계좌로 입금

마. 열 램 기 간 : 2017. 11. 15 ~ 2017. 11. 29 (15일간)

바. 열 램 장 소 : 중구청 가로환경과 (본관 7층)

사. 이 의 제 기 : 보상대상 개별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중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아. 문 의 : 가로환경과 보상담당자 김범용 (☎02-3396-6024)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일 련 번 번호	소 재 지	지 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1	중구 남창동 205-185	대	15.85 15.85	이언우 김숙영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844번지 (남산타운아파트 22-903)			
2	중구 남창동 205-187	대	31.4	사단법인 남대문선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6-19 크레용 3층	근저당권	남대문새마을금 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8길 10
3	중구 남창동 205-225	도로	4.2	(주)한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30	현소유자 (등기미기재)	우리은행 (총무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4	중구 남창동 205-226	대	11.2	(주)우리피앤에스 (부동산개발사업본 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1 9	근저당권	우리은행 (총무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5	중구 남창동 205-228	대	7.1	박삼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6	중구 남창동 205-229	대	2.3					
7	중구 남창동 208-1	대	7.6	백정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902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5-401			
8	중구 남창동 209-6	대	33.7	이훈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근저당권	(주)한국외환은행 (상도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9	중구 남창동 212-1	대	1.5	이종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35 용산시티파크 101동 1401호	근저당권	(주)신한은행 (남대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0
			1.5	조인숙				
10	중구 남창동 205-87	대	20.2	국(기획재정부)				
11	중구 남창동 205-227	도로	14.2	국(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12	중구 남창동 207-1	도로	2.6					
13	중구 남창동 244-2	도로	1.0					
합 계			170.2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1	중구 남창동 205-40	화단	조적	4.2	박삼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계단	화강판석	0.9					
		영업간판	철재기둥	1식					
2	중구 남창동 205-61	담장및축대	조적, 석축	20.8	김용선·박점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61	근저당권	남대문 새마을금 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8길 10
		탑	석조	1식					
		조형물	석조	4식					
		화단	석조, 벽돌조	4식					
3	중구 남창동 205-100	건물1층	석축, 조적	4.3	어윤홍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0길 17 (갈현동 해오름아파트) 701호			
		계단	콘크리트	0.3					
		전기시설	계량기	2식					
4	중구 남창동 244-1	주차박스	샷시	0.8	삼선개발(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69-2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5	중구 남창동 205-150	건물1층	조적	10.6	어윤홍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0길17 (갈현동 해오름아파트) 701호			
		전기시설	계량기	1식					
		에어컨실외기		1식	김남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33, 302호(천연로, 산경아파트)			
6	중구 남창동 208	건물1층	목조	0.7	백정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902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5-401			
		건물1층		1.2					
		지층		8.9					
		전기시설	계량기	2식					
		수도시설	계량기	1식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7	중구 남창동 209-1	건물1층	목조	22.8	이훈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근저당권	(주)한국외환은행 (상도동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가건물2층	판넬	0.6					
		가건물2층		0.4					
		계단	콘크리트	1.5	김화자				
		전기시설	계량기	2식					
		고압가스		1식					
		영업간판		2식					
8	중구 남창동 205-104	시설물	각파이프	5.0	양철순 (뽕끼마루)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가건물	샷시	3.0	최영천 (신의주참쌀순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고압가스	철재	0.5					
		영업간판		2식					
		에어컨실외기		4식	이부연 (노래방)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출입구	전광판 등	0.6					
		영업간판		1식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남창동 64-1~205-122간 도로개설공사

연 번	소 재 지	영업의 종 류	상 호 명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관리종류및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중구 남창동 205-100	봉제공장	대광사	1식	박형수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0			
2	중구 남창동 205-150	봉제공장	금우사	1식	김남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33, 302호(천연로, 경서아파트)			
3	중구 남창동 205-104	음식업	신의주 잡쌀순대	1식	최영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04			
4	중구 남창동 209-1	음식업	엄마손백반	1식	김화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5	중구 남창동 209-1	인형판매업	동강	1식	김성태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9-1			
6	중구 남창동 208	배관설비	남창설비	1식	남성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44 경서아파트 70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797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항측1~2차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7.11.15. ~ 2017. 11.29.
4. 대 상 자 : 이*환외 79인
5. 게시장소 : 구보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포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연번	등기번호	성명	과세대상	주소	우편번호	비고	문서내용
1	1100128033468	이*환 외 1명	을지로4가 16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8층 **01호 (용자동, 센트럴빌 아스테리움 서울)	04323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	1100128033409	백*옥	무교동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1-***24	03190	주소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3	1100128017127	송*달	충무로4가 149-***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67, 102-***1502호(용산동5가 파크타워)	04385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4	1100128033338	김*범 외 1	인현동2가 181-****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8길 **16,(인현동2가)	04558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5	1100128033420	합자회사 동미**공사	을지로2가 199-**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10-**1	04521	주소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6	1100128033367	조*행	신당동 377-**52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52	04607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7	1100128033394	서*덕	중림동 394-**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2길 **29,(중림동)	04503	주소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8	1100128033395	서*덕	중림동 394-**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2길 **29,(중림동)	04503	주소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9	1100128033398	장*중	중림동 156-**72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5길 **5,(중림동)	04504	주소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0	1100128033547	공*상	장충동2가 112-**17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2,116동 1605호(약수하이츠)	04593	이사감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1	1100128033370	한*철	신당동 404-**22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9길 **18(신당동)	04609	이사감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2	1100128033396	전*자 외 8	신당동 385-**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5-**16번지 장충아파트빌라 402호	04607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3	1100128033369	오*영	신당동 404-**22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41, 402호 (신당동, 뉴캐슬)	04609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4	1100128033570	이*욱	신당동 236-**216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4길 **22(신당동)	04613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5	1100128033576	김*자	신당동 304-**21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52-**19(신당동)	04613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6	1100128033571	김*근	신당동 304-**15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29-**4(신당동)	04612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7	1100128033569	이*욱	신당동 236-**216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4길 **22(신당동)	04613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8	1100128033580	신*분	신당동 120-**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22-**1(신당동)	04577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19	1100128033598	김*숙	필동1가 23-**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9,(필동1가)	04627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0	1100128033361	기*도 외 1	광희동2가 295-**1	서울시 중구 퇴계로62길 **9-**6, 201호(광희동2가)	04614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1	1100128033437	이*영	남산동2가 45-**2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59	04630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2	1100128033533	길*경 외3	회현동1가 194-**4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길 **29-**8, 807호 (회현동1가, 삼풍아파트)	04633	이사감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3	1100128033586	장*기	신당동 154-**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길 **37(신당동)	04578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4	1100128033365	임*희	신당동 41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6길 **12, 102동 701호 (역삼동, 현대까르띠에710)	06214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5	1100128033454	이*수	을지로3가 9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디동 2502호(정자동, 료알팰리스)	13596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6	1100128033356	강*학	을지로7가 11-**4	경기도 양주시 감악산로52번길 **51	000-000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7	1100128033436	이*예	회현동2가 1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2-**59	03464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8	1100128033529	백*태	회현동1가 199-**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13, 가동302호(개포동,아원프레스)	06306	이사감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29	1100128033355	㈜제이**산업개발외 1	광희동1가 185-**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25 501호 (원당동, 제일프라자)	22647	이사감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30	1100128033354	㈜제이**산업개발외 1	광희동1가 185-**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25 501호 (원당동, 제일프라자)	22647	이사감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31	1100128033530	최*혁 외3	봉래동 1가 1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8-**122,(여의도동,한양아파트)	07338	수취인불명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32	1100128033579	최*숙	신당동 296-**4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72,204동701호(청천동,금호타운)	21363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33	1100128033464	박*기	산림동 4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8, 206호 (성내동, 호암아력스)	05398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34	1100128033443	주*란	남산동2가 18-**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25-**14	04629	폐문부재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35	1100128017715	남*인 외 2인-가정주거용지역(주거용)	주교동 15-**2	서울 중구 청계천로 210-**1(주교동) 태림모사	04546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36	1100128014541	전*자의외 8	신당동 385-**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5-**16번지 장충아파트빌라 402호	04607	수취인불명	합동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
37	1100128017650	정*애	을지로4가 111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64, 1동 502호(윤래동3가, 국화아파트)	07296	폐문부재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38	1100128017651	나*노	신당동 251-**14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92길 **10, 104동 802호(청담동, 청담대우유트카운티)	06070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39	1100128017652	김*운	예장동6-**1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32	04628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명령
40	1100128035831	주*예	장충동1가 **	경기도 구리시 장차대로37번길 * 55, 108동 102호 (교문동, 덕현아파트)	11938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1	1100128035415	이*순	신당동 239-**4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68길 * 12-9,(석관동)	02782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2	1100128034851	우*희	충무로2가 *53-**21	서울특별시중구 저동2가 * 48-11 (401호)	000-000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3	1100128035195	김*남	활학동 1*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활월유수동길 * 165	58431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4	1100128034369	함*희 (106호)	충무로 239번지 * 53(충무로 239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 16, 101동 504호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	04202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5	1100128033401	윤*순	중림동 331-**33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10, 104동 1601호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04502	폐문부재	합동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46	1100128034358	위*자	중림동 149 315호	서울특별시 서소문로6길 * 34, 성요셉아파트 315호	000-000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7	1100128034745	풍찬기업**주식회사**	다동 1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 21	000-000	주소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8	1100128035519	강*자	홍인동 2-**2외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로 126, 301동 1902호(성북동, 성동마을업지빌리지3차)	000-000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49	1100128034258	최*택	신당동 425-**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 50, 111동 901호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000-000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0	1100128034151	최*욱	을지로6가 *18-**8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50길 * 18(상계동) 미주동방백운아파트 101동 1402호	01623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1	1100128035901	이*	신당동 333-**255(401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 95, 401호 (신당동)	04592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2	1100128035875	김*기	신당동 330-**47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나길 * 2(신당동)	04589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3	1100128035618	길*경외3	회현동1가 *194-**47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길 * 29-8, 807호 (회현동1가 *, 삼풍아파트)	04633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4	1100128034259	김*경	신당동 429-**14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5길 * 22, 201호(신당동)	04604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5	1100128034362	양*례	만리동1가 *56-**70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7길 * 58, 3층호 (만리동1가 *)	04502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6	1100128034194	엄*남	광희동2가 *178	서울시 중구 퇴계로66길 * 3	04614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7	1100128034147	평*시장(박*선)	을지로6가 *17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 20(을지로6가 *) 관리사무실	04563	주소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8	1100128035357	조*현	홍인동 2-**27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68-*,(홍인동)	04570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59	1100128035274	**주식회사** 조영	남창동 167-**1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 21,(명동)	04534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0	1100128035654	김*실	남창동 190-**12외 1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길 * 22-1(남창동)	04635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1	1100128035772	**주식회사**알뜰디시	남창동 167-**3외 3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길 * 8,(남창동)	04634	주소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2	1100128035691	서*주	회현동1가 *82-**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가 *길 * 36, 동인하이츠102호 (장충동1가 *)	04606	이사감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3	1100128035842	전*기	장충동2가 *173-**2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3-**4(장충동2가 *)	04618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4	1100128034738	장*환	다동 134-**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2길 * 5-12 1층 (쌍림동)	04615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5	1100128035269	김*운	예장동 6-**1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 32(예장동)	04628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6	1100128035054	김*임	인현동1가 *4-**12	서울 중구 을지로20길 * 24-3	04549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7	1100128034255	김*희	신당동 411-**1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 * 28-4	04607	이사감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8	1100128035686	백*숙	회현동1가 *6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6/7) 한진아파트 20*동 203호	02831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69	1100128034105	주제**외이 산업개발(주)인	광희동1가 *185-**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 25, 501호(원당동,제일프라자)(원당동)	22647	이사감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0	1100128035788	최*혁외3인	봉래동1가 *1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삼부아파트 8-*22(여의도동,한양아파트)	07338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1	1100128034699	장*기 외 1명	남산동2가 *43-**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1106동 12**호 (신정동, 목동신시가 *지아파트)	08098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2	1100128034698	장*기 외 1명	남산동2가 *43-**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1106동 12**호 (신정동, 목동신시가 *지아파트)	08098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3	1100128034700	장*기 외 1명	남산동2가 *43-**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1106동 12**호 (신정동, 목동신시가 *지아파트)	08098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4	1100128034319	박*호	신당동 370-**51	경기도 가 *평군 청평면 고재길 * 348	12456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5	1100128034811	**주식회사** 케이텍(115)	동지로27*199-**40외 1필지	서초 서초중앙로 26, 래미안서초유니빌 21**호	000-000	이사감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6	1100128035687	백*태	회현동1가 *199-**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 13, 가 *동302호(개포동,아원포레스)	06306	이사감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7	1100128035742	이*희	남창동 31-**3외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 씨동 205호(한신아파트)	06101	주소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8	1100128035769	조*현외1	남창동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200, 10*동 1702호 (창동, 금음아파트)	01472	수취인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79	1100128035634	김*국	회현동1가 *47-**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48, 13*동 2502호(매탄동,현대아파트)	16538	주소불명	2017년 정기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80	110012803	김*자	신당동 304-**21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 59-4	04614	수취인불명	합동사진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1차)